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11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('12. 12. 11개정, '13. 12. 12시행)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, 별정직의 직종개편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용어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정비

○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계획(2011. 10)에 의거 '14년도 복지직 순증분 인력(2명)을 증원시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복지에 기여

2. 주요내용

가. 직종개편 주요내용(일반직 재편)

ㅇ 기능직

- 직렬 신설(3개) : 기술직군 ☞ 운전・위생・시설관리직렬
- 직렬 변경(7개) : 관리운영직군
 ☞ 전화상담운영・전기운영・기계운영・열관리운영・농림운영・사무운영・보건운영직렬

ㅇ 별정직

- 별 정 직 : 별정6급상당(비서)
- 일 반 직 : 유사직렬(전담직위 지정)
- 전문경력관 : 나군(6・7급상당)

ㅇ 계약직

- 명칭변경 : 임기제(일반임기제)

나. 정원의 총수 조정 : 559명 → 561명(증2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47명 → **549명(증2)**
-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증원 2명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다. 정원책정기준 조정

○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별표 1)

구 분	일 반 직	기능직・고용직	별정직・정무직
현 행	85%이상	12%이내	3%이내
조 정	+14.5%	△12%	△2.5%
개 정	**99.5% 이상**	**폐지**	**0.5% 이내**

※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・지도직, **지방전문경력관**을 포함한다.

○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별표 2)

- 일반직(연구・지도직 제외)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현행	1% 이내	6% 이내	28% 이내	32% 이내	25% 이내	8% 이상	% 이내
조정		△0.8%	△2.8%	△2.8%	△0.1%	+5.7%	+0.8%
개정	**1% 이내**	**5.2% 이내**	**25.2% 이내**	**29.2% 이내**	**24.9% 이내**	**13.7% 이상**	**0.8% 이내**

- 기능직

구분	6급	7급	8급	9급
현행	7% 이내	17% 이내	26% 이내	50% 이상
조정	△7%	△17%	△26%	△50%
개정	**폐 지**	**폐 지**	**폐 지**	**폐 지**

- 연구・지도직 : 변경없음

- 별정직

구 분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현 행	43% 이내	57% 이내		
조 정	+57%	△57%		
개 정	**100% 이내**	-	-	-

라. 직급별 정원표(별표 3)

○ 일반직 : 461명 → 528명(증67)

- 본　　청 : 증30명(6급 +4명, 7급 +7명, 8급 +7명, 9급 +12명)
- 의　　회 : 증 5명(6급 +1명, 8급 +2명, 9급 +2명)
- 직속기관 : 증 9명(6급 +1명, 7급 +1명, 8급 +4명, 9급 +2명 전문경력관 +1명)
- 사 업 소 : 증12명(7급 +2명, 8급 +5명, 9급 +2명, 전문경력관 +3)
- 읍　　: 증 1명(9급 +1명)
- 면　　: 증10명(7급 +1명, 9급 +9명)

○ 기능직 : 폐지, 59명 → 0명(감59)

- 본　　청 : △27명
- 의　　회 : △4명
- 직속기관 : △8명
- 사 업 소 : △9명
- 읍　　: △1명
- 면　　: △10명

○ 별정직 : 7명 → 1명(감6) ※ 본청 비서요원

- 본　　청 : △1명
- 의　　회 : △1명
- 직속기관 : △1명
- 사 업 소 : △3명

○ 연구직 : 3명(변동없음)

○ 지도직 : 28명(변동없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공무원법」

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　타

(1) 신・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 : 생 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)

○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 통보[도 자치행정과-7368(2013. 10. 21)호]

(3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59명”을 “56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47명”을 “549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”을 “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”로 하고

제5조 중 “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”을 “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”으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”를 “공무원(일반직, 별정직) 및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계약직 공무원(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)”을 “비정규 민간인 계약직”으로 한다.

②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기능직 등 신규공무원”을 “신규공무원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 반 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.5% 이상	0.5% 이내

※비고 :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1% 이내	5.2%이내	25.2%이내	29.2%이내	24.9%이내	13.7%이상	0.8%이내

2. 연구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이내	97%이상	11%이내	89%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100% 이내			

[별표 3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561	268	12	96	31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28	263	12	68	31	154
4급	1	1				
4~5급	3	2		1		
5급	27	12	3		2	10
6급 상당이하 소계	493	248	9	66	26	144
전문경력관 소계	4			1	3	
별정직 계	1	1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 구 관						
연 구 사	3	3				
지도직 계	28			28		
지 도 관	3			3		
지 도 사	25			25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59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47명 2. (생 략)	**제2조(정원의 총수)** ·····561명 ·····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49명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. 다만,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4조(직급별 정원)** ·····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·····.
제5조(직렬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5조(직렬별 정원)** ·····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 ·····.

※ 참고자료(별표 - 신 · 구조문 대비표)

현 행

【별표 1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 반 직	기능직 · 고용직	별정직 · 정무직
비율	85% 이상	12% 이내	3% 이상

【별표 2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이내	6%이내	28%이내	32%이내	25%이내	8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
비율	7% 이내	17% 이내	31% 이내	45% 이상

3. 연구 · 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1% 이내	89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율		43% 이내	57% 이상		

개 정

【별표 1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 반 직	별정직 · 정무직
비 율	**99.5% 이상**	**0.5% 이내**

【별표 2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**1% 이내**	**5.2% 이내**	**25.2% 이내**	**29.2% 이내**	**24.9% 이내**	**13.7% 이상**	**0.8% 이내**

<삭제>

2. 연구 · 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1% 이내	89%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율		100% 이내			

현 행

【별표 3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559	266	12	96	31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461	233	7	59	19	143
4 급	1	1				
4 ~ 5급	3	2		1		
5 급	27	12	3		2	10
6급 상당 이하 계	430	218	4	58	17	133
별정직 계	7	2	1	1	3	
6급 상당 이하 계	7	2	1	1	3	
연구사 계	3	3				
학예연구사	1	1				
임업연구사	1	1				
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 계	28			28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5			25		
기능직 계	59	27	4	8	9	11

개 정

【별표 3】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561	268	12	96	31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28	263	12	68	31	154
4 급	1	1				
4 ~ 5급	3	2		1		
5 급	27	12	3		2	10
6급 상당 이하 소계	493	248	9	66	26	144
전문경력관 소계	4			1	3	
별정직 계	1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1		
지도직 계	28			28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5			25		